

# 2011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 1. 사회적 기업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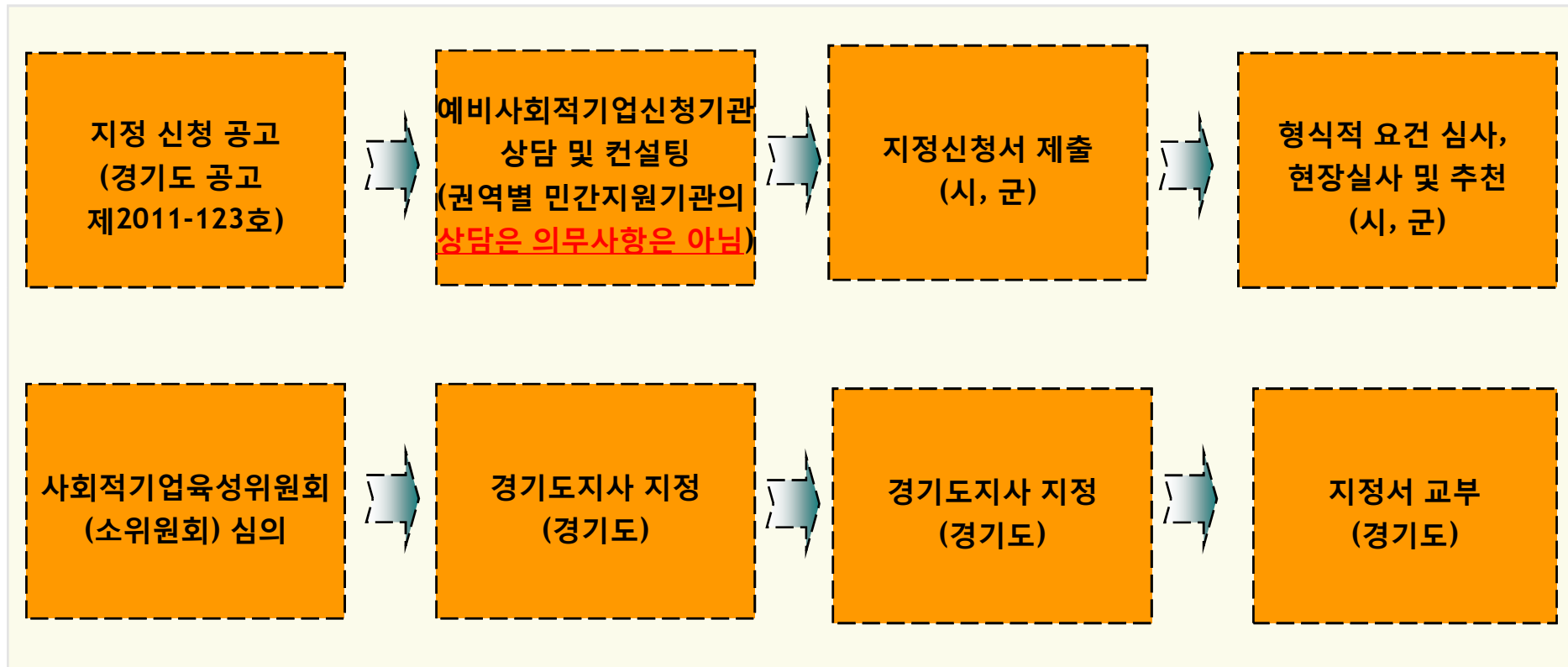
- 핵심적 두 가지 요소
  - 기업을 하는 주요 동기가 **사회적 목적 실현**일 것
  - “우리는 빵을 굽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루비콘 대표 Rick Aubry)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주요활동**으로 할 것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의 정의
  -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
- 하이브리드 조직(부분적으로 영리, 부분적으로 비영리)

##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2. 지정절차

### 1.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 3-1 조직형태

1. 조직형태	
<b>조직 형태</b>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법인, 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상 : 비영리단체
<b>구비 서류</b>	<input type="checkbox"/> 법인설립허가증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input type="checkbox"/> 법인등기부등본
<b>쟁점 사항</b>	<p>※ “사업단”의 경우</p> <p>-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 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음</p> <p>- 하지만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 회계, 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p>

### 3-2 유급근로자 및 영업활동

2 유급근로자 및 영업활동	
인증 요건	<b>1명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b> 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li> <li>※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관련 1인 이상 유급근로자 포함</li> <li>○ 영업활동 수입 증명 서류, 4대보험 가입 증명서</li> <li>- 영업활동 증빙 서류는 재무제표(회계사 작성),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혀있는 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급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 규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2011년 시간급 4,320원, 주44시간 기준 976,320원 이상, 주40시간 기준 902,880원 이상 지급.</li> <li>-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li> <li>※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li> </ul>

### 3-3 사회적목적실현

3.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유형에 따른 내용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b>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b>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b>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b>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b>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b>
지역사회공헌형 (신설)	<b>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b>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b>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b>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 예시)물품공급 계약서(불특정다수대상 서비스 제공의 경우)

### 3-3 사회적목적실현

<p>사회서비스 내용</p>	<p>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보육, 문화, 예술, 관광, 운동, 환경,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p>
<p>취약계층 근로자</p>	<p>△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li> <li>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만 55세 이상</li> <li>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li> <li>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li> <li>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li> <li>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li> <li>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li> <li>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li> <li>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li> <li>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li> <li>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li> <li>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li> </ul> </li> <li>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li> </ol>

### 3-3 사회적목적실현

####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 구체적 증명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소득금액증명/급여명세표 등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탈북자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모자가정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이민자	신분증 사본
장기실업자	4대보험 가입 이력서, 가입이력을 통한 실업내용 확인
경력단절여성	4대보험 가입 이력, 배우자 소득증명서

기타형 : 불특정다수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 의뢰서, 위탁계약서 등
----------------	----------------------------



### 3-4 정관 및 규약 제정

4. 정관 및 규약	
필요 요건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b>정관이나 규약</b>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쟁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li> <li>-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li> <li>-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li> </ul>

5. 기타사항	
필요 요건	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할 것

## 4. 기타 사항

기타 사항	
필요 요건	<p><input type="checkbox"/> 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 행정구역 내 위치하고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2년(지정), 사회적기업 3년(인증)</p> <p><input type="checkbox"/> 지정취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경우.(재정지원 포함)</li> <li>2.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부정수급을 행한 경우.</li> <li>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후 2년 내 사회적기업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li> <li>4.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경우 등.</li> </ol> <p><input type="checkbox"/>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지원사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120만원) 지원사업 참여,</li> <li>2. 사회적일자리(98만원) 창출사업 참여 가능.</li> <li>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최대 3천만원) 참여.</li> <li>4. 전문성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컨설팅 등 지원</li> <li>5. 사회적기업 포럼, 제품전시회, 기업연계 등</li> <li>6.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심사시 추천</li> <li>7. 경기도 실과,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제품 우선 구매독려 등</li> </ol>

## 인증 요건 비교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법인 형태, 사업단 가능	법인형태, 사업단가능
사회적목적실현 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목적실현 유형이 6개월간 지속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이 있으면 가능 기간 및 금액 비율 없음	최소 6개월간의 기간 필요 총수입/총노무비 비율이 30%이상일 경우
유급근로자 고용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 필수 경기도민이 필수로 있어야함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 6개월간의 기간 필요 4대보험 가입 필수
민주적 의사 결정구조	요구하지 않음	2회 이상 요구함. 정관에 민주적의사결정구조 내용 반드시 포함
정관, 규약의 구비	법인의 정관과 사업단의 규약 반드시 필요	법인의 정관과 사업단의 규약 반드시 필요 정관 및 규약 반드시 공증후 제출
이윤의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윤의 재투자 내용 포함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윤의 재투자 내용 포함

## 5. 신청서류 및 신청기간 등

### 신청서류

<p>신청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1부[서식 1]</li> <li>○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소개서 1부[서식 2]</li> <li>○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li> <li>○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li> <li>○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li> <li>○ 정관 또는 규약</li> <li>○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 구체적 증명서류</li> <li>○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관련 1인 이상 유급근로자 포함</li> <li>○ 영업활동 수입 증명 서류, 4대보험 가입 증명서</li> <li>○ 사업계획서(사업내용, 수익확보수단 등) [서식 3]</li> <li>○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포함) [서식 4]</li> <li>○ CD 1부(신청서, 소개서,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li> </ul>
<p>신청 기간 및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접수 기간 : 2011년 1월 31일(월)~2월 16일(수)</li> <li>2.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 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 (* 시군 업무 담당 부서 안내 전화번호는 신청 공고문에 있음)</li> <li>3.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li> </ol>

## 6. 경기도권역 시, 군 문의처

시군	부서	전화번호	시군	부서	전화번호
수원시	일자리창출과	228-3881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729-2853
고양시	일자리센터	8075-3664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9
용인시	지역경제과	324-2472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3279
안양시	주민생활지원과	389-2336	남양주시	지역경제과	590-8905
의정부시	사회복지과	828-2734	평택시	일자리정책과	659-5715
시흥시	일자리정책과	310-6052	화성시	경제정책과	369-2684
광명시	기업지원과	02-2680-2269	과주시	기업지원과	940-4537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658	광주시	사회위생과	760-3738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682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585
구리시	산업경제과	550-2287	양주시	기업경제과	820-2417
안성시	지역경제과	678-5452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90
오산시	지역경제과	370-3959	하남시	일자리TF추진관	790-5113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2	여주군	주민생활지원과	887-2278
동두천시	주민생활지원실	860-2369	양평군	주민복지과	770-2298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58	가평군	경제과	580-2952
연천군	주민생활지원과	839-2447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8008-3231

## 7. 신청서 작성 요령

<b>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b>		처리기한		
		60일		
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			③ 연락처	
④ 전체 유급 근로자수	명 (여: 명)	취약 계층 근로자 수	명 (여: 명)	취약 계층 고용 비율 %
⑤ 소재지				
⑥ 조직 형태	<input type="checkbox"/> 상법상 회사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주된 사업				
⑦ 주된 목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공헌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⑧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전체서비스 수혜자	취약 계층 서비스수혜자	취약계층서비스수혜자 비율	
⑨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 3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⑩ 매출액	천원	
⑪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⑫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⑬ 정부 재정 지원 사항(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 대표자		2011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중				

### 1. 신청기관명

- 신청 모법인과 사업단 명칭까지 정확하게 기입
- ex : (사)○○협회 ○○사업단

### 2. 대표자

- 신청기관 대표자의 이름 기입
- 공동대표인 경우에 모두 기입

### 4. 유급근로자 수

- 신청일 당시 대표자, 자원봉사자 제외한 근로자수 기입
- 근로계약형태 관계없이 4대 보험 가입자 해당

### 5. 소재지

- 신청기관(사업단)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 기입

### 6. 조직형태

- 신청기관(단체)의 해당 형태를 기입

### 7. 주된목적

-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중 택1 기입

### 8.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비율을 확인할수 있도록 기입
- 일자리제공형은 일자리 참여자 수, 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 대상자수 기입

### 10 매출액

- 제출 서류의 매출액 기입

### 11. 연계기업명

- 신청사업에 연계하고 있는 기업(기관)을 기입

### 12.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 신청사업에 대한 연계기업의 지원(현금, 현물 등)기입

### 13. 재정지원사항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 지자체 지원시 내역을 모두 기입

## 8. 신청기관 소개서

### 신청기관 소개서

사업명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조직 현황	근로자	총근로자 : 명(여: 명)			
	취약계층	취약계층 근로자(여: 명) : 고령자 ( )명, 장애인 ( )명, 저소득층 ( )명, 기타( ) ( )명			
	수혜대상자	총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4대보험 가입확인 :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산재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연금			
	의사결정 구조	<input type="checkbox"/> 이사회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자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주주총회 <input type="checkbox"/> 총회			
재정 구조	총수입 (1월~8월)	영업수입	정부·지자체 보조	민간 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비즈니스 모델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1. 근로자

- 대표자를 제외한 유급근로자 수 기입

#### 2.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층 등 인원수 명기

#### 3. 의사결정구조

- 조직의 주된 의사결정구조 기입

#### 4. 비즈니스모델

- 현재 수익확보 수단 및 규모 현황에 대한 기입

## 9.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사업건별로 기재 (예를들어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를 3장 작성)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산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향후 계획	



# 10.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사회적기업인증계획서 : 1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신청일 기준)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0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취약계층(주 대상)을 00%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취약계층(주 대상)에게 000% 이상 사회서비스(주 사업) 제공		
사업수행 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수혜대상 (인원수, 서비스가격,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의 지속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익금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1페이지		

# 10.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사회적기업인증계획서 : 2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이내	<p><b>사업 계획 수립(기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li> <li>-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li> <li>-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li> <li>-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li> <li>-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li> </ul>
6개월이내	<p><b>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li> <li>-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li> <li>-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li> <li>-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li> <li>-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li> </ul>
9개월이내	<p><b>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li> <li>-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li> </ul> <p><b>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b></p>
12개월이내	<p><b>사회적기업 인증 신청</b></p>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경기복지재단  
사회적기업 지원단  
이성훈  
031-267-9392  
010-3253-6771  
ritter15@ggwf.or.kr

